

# 노인학대 유형 및 예방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 1조의 2제4호)
- 노인학대의 특성: 지속성, 복합성, 반복성, 은폐성

	<p>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p>
	<p>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p>
	<p>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p>
	<p>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p>
	<p>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p>
	<p>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p>
	<p>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p>

※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88-1389

## ■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1.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4.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헐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6.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